



보도 일시	2023. 2. 10.(금) 10:30	배포 일시	2023. 2. 9.(목) 16:0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	책임자	과 장	심현우 (044-215-4750)
		담당자	사무관	김용준 (kimyj1011@korea.kr)
			사무관	박수민 (sumin@korea.kr)
			사무관	유경화 (helenat1212@korea.kr)
			사무관	장시열 (siyul@korea.kr)

「외환제도 개편 방향」 발표

- 외환규제 혁신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추진 -

- 기재부·금융위·관세청·한은·금감원은 2.10.(금) 10:30 「경제 규제 혁신 TF(주재: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)」에서 「외환제도 개편 방향」을 발표하였습니다.

1. 추진배경

- 「외국환거래법」 제정('99년) 이후 외환거래수요가 양적·질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원칙적 사전신고 제도 운영, 복잡한 거래절차* 등 과도한 외환 규제가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습니다.

* 현재 외환법이 규율하고 있는 350여개의 거래유형별 단순신고·신고수리·신고예외 등 상이한 규제와 절차로 국민·기업·금융기관의 외환거래 불편 확대

< 외환거래의 질적·양적 변화 >

- ◇ (量) 경제규모(GDP, 억불): ('99) 4,973 → ('19) 16,514 <3배 이상 증가>
 유학·여행·개인이전소득지급(억불): ('99) 72 → ('19) 424 <5배 이상 증가>
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규모(억불): ('99) 80 → ('19) 5,778 <70배 이상 증가>
 * 코로나19 기간 국경간 이동 제한을 감안, '20~'21년은 비교대상에서 제외
- ◇ (質) 외환거래 관련 새로운 지급·결제수단 및 거래방식, 금융업종 등장

- 대외건전성 유지를 위한 일부 외환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나 성숙한 우리 경제 수준에 맞지 않는 상당수 낡은 규제는 조속히 개선해야 하며,

- 건실한 대외부문의 위기대응역량* 등을 감안하면, 지금이 선진적 외환 제도 전환을 시작하기 적합한 시점입니다.

* 코로나前(4,092억불, '20.2월)보다 높은 수준 외환보유액(4,232억불, '22.12월) 유지, 단기외채/총외채 비중 상승에도 과거 대비 양호('22.3/4 26.8%, 10년 평균 27.9) 등

□ 다만, 경제에 미치는 영향, 수십년간 이어온 관행 개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외환제도 개편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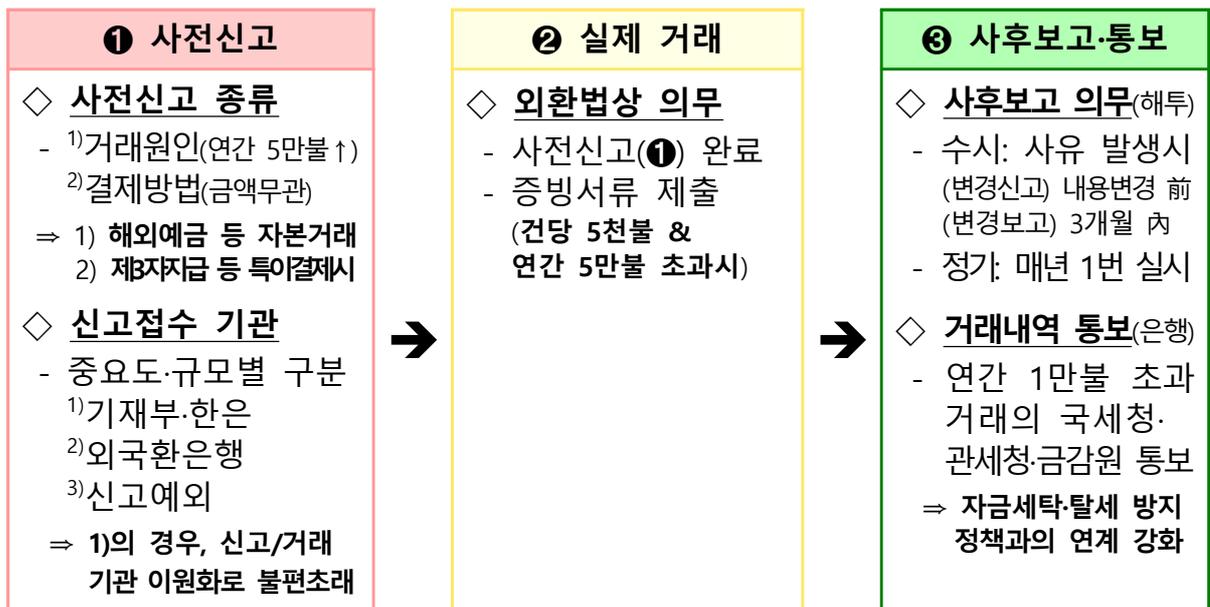
- 먼저, 시행령·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·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거래절차 및 외환업무영역 관련 규제를 우선 혁파하고,
- 자본거래 사전신고제 전면개편, 업권별 업무규제 폐지 등 구조개편 및 입법 필요과제는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진합니다.

2. 1단계 주요과제

□ (국민) ①無증빙 해외송금 한도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한도를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로 확대하고, ②자본거래 관련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한 유형을 현행 111개에서 65개로 대폭 축소하여 국민의 일상적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.

- ① 연간 10만불 한도 이내에서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국민은 별도 서류 제출,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.

< 고객 입장에서의 현행 외환거래 절차 및 의무 도식화 >



② 자본거래 관련 외국환은행 사전신고 축소로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증빙 서류 준비 등 거래당사자의 불편*을 해소할 계획입니다.

* <사례: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보증>

現) 1)보증계약 신고서 작성 및 2)보증사유서, 3)보증 계약서, 4)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, 5)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채권 회수방안 등의 서류 필요
→ 改) 은행의 차입·보증 계약서 확인 등 간소화된 절차만으로 자본거래 가능

□ (기업) ①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천만불에서 5천만불로 확대하고, ②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기업의 외화조달 및 해외투자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.

① 현재 기업이 연간 3천만불을 초과하는 외화자금을 해외로부터 차입할 경우, 기재부 사전신고가 필요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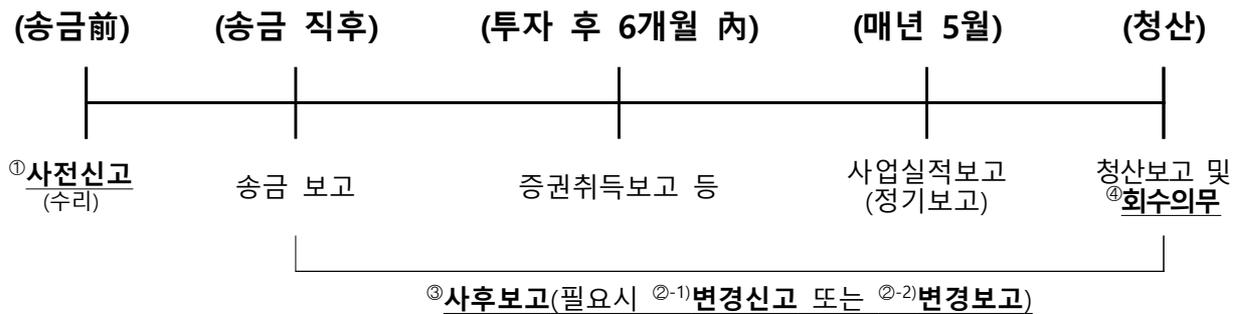
* 연간 3천만불 이내 차입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 사전신고 필요

⇒ 제도개선 후에는 기업이 연간 5천만불 이하의 외화자금 차입시 기재부 사전신고 없이 가능합니다.

② 현재 국내기업이 현지법인 설립, 10% 이상 해외법인 지분취득 등 해외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, 사전신고 외에도 변경신고(사유발생 前), 변경보고(3개월 內) 등 수시보고와 매년 1회 정기보고 등 사후보고가 필요합니다.

⇒ 제도개선 후에는 수시보고 제도가 폐지되어 연 1회 정기보고로 통합되고, 정기보고 내용도 대폭 축소되어 기업의 사후보고 부담 및 외국환은행의 관리부담이 완화됩니다.

< 現 외환법규상 해외직접투자 신고·보고절차 및 의무 >



③ 현재 2만불 이상 소액거래의 사전신고 및 사후보고 위반시 각각 200만원과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, 10억원 이상 자본거래 및 25억원 초과하는 비정형적 지급시 사전신고 절차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.

⇒ 제도개선 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을 2만불에서 5만불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전신고 등의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형벌적용 대상 기준을 2배 상향합니다.

□ (금융기관)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對고객 환전서비스 등 외환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기관의 외환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, 소비자의 선택권·편익을 확대하겠습니다.

① 현재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(대형 증권사)만 對기업 환전업무 수행이 가능한 상황이나,

⇒ 제도개선 후에는 모든 종합금융투자사업자(현재 기준 9개)가 외환전산망 직접 연결, 시스템·인력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을 전제로 對고객(국민·기업) 환전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.

② 현재 증권금융은 스왑시장에서 외국환중개사와의 거래가 불가*하여 외화조달 및 유동성 공급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나,

* 현재 FX 스왑시장 참여기관을 기재부, 한은, 은행, 일부 증권·보험사 등으로 제한

⇒ 제도개선 후에는 증권금융의 스왑시장 참여가 허용되어 낮은 신용도로 은행과의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증권사의 외화조달 경로가 확대되고 스왑시장의 수급 불균형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.

□ (정책수단) 현재 대외건전성 위기 발생 또는 우려시 자본통제 권한이 규정되어 있어, 이를 근거로 자본거래 당사자에 대한 행정지도가 가능하지만 별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.

⇒ 제도개선 후에는 시장참여자의 정책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외건전성 악화 정도에 따라 자본거래 방식 등을 협의 또는 권고하는 규정을 명시할 계획입니다.

3. 2단계 추진방향

□ 향후 근본적 구조개선이 필요한 입법 추진 과제로서

① 외환규제체계에 「원칙허용·예외규제(네거티브 규율)」 원칙을 도입하여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전신고 부담도 완화할 예정입니다.

② 역량있는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은행, 증권, 보험 등 업권별 업무 칸막이를 해소할 예정입니다.

③ 위기발생시 정부 조치수단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**세이프가드** 제도를 정비하고 **경제안보** 목적의 독자적 금융제재를 도입할 계획입니다.

□ 본격적인 구조개편이 필요한 상기 과제들은 관련 기관·업계·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「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」를 통해 지속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.

4. 향후 계획

□ 1단계 과제들은 금년 상반기 중 「외국환거래법」 시행령 및 「외국환거래 규정(기재부 고시)」 개정 등을 통해 우선 추진하는 한편,

○ 2단계 과제들은 경제상황을 보아가며 금년말 세부방안 발표를 추진 하겠습니다.

※ [별첨] 1. 「외환제도 개편 방향」

담당 부서 <총괄>	기획재정부	책임자	과 장 심현우 (044-215-4750)
	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	담당자	사무관 김용준 (kimyj1011@korea.kr) 사무관 박수민 (sumin@korea.kr) 사무관 유경화 (heler1212@korea.kr) 사무관 장시열 (siyul@korea.kr)
<공동>	금융위원회	책임자	과 장 고상범 (02-2100-2850)
	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	담당자	사무관 김수아 (sooa90@korea.kr)
<공동>	관세청	책임자	과 장 이동현 (042-481-7930)
	조사국 외환조사과	담당자	사무관 윤지혜 (yoonje@korea.kr)
<공동>	한국은행	책임자	팀 장 임영진 (02-759-5734)
	국제국 외환심사팀	담당자	과 장 김성기 (sk.kim@bck.or.kr)
<공동>	금융감독원	책임자	팀 장 양유형 (02-3145-7922)
	외환감독국 외환총괄팀	담당자	선임조사역 김호정 (kimhj@fss.or.kr)